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2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23861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19. 11. 21.
판 결 선 고	2019. 12.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2,640,770원(과세번호 B), 취득세 154,026,880원(과세번호 C)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2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31. [redacted]공사로부터 [redacted] [redacted]군 D 공장용지 11,63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은 후 위 토지 지상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 5. 10.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면제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1. 29. [redacted]관리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매도한 후 이를 5년간 임차하되, 위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위 토지 및 공장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약사항이 포함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8. 11. 30. [redacted]관리공사에 위 토지 및 공장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8. 12. 28.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 132,400,110원, 지방교육세 13,240,010원, 농어촌특별세 6,620,000원의 합계 152,260,120원,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 136,139,190원, 지방교육세 7,779,380원, 농어촌특별세 9,724,220원의 합계 153,642,790원을 각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 10.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2019. 1.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과 그 가산금이 포함된 합계 306,667,650원[= 토지 152,640,770원(본세 152,260,120원 + 가산금 380,650원) + 공장 154,026,880원(본세 153,642,790원 + 가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2

금 384,09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지'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1. 29. 이 사건 취득세 등 및 가산금 전액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1. 31. 원고에게 징수유예기간을 2019. 2. 1.부터 2019. 7. 31.까지로 하는 징수유예 결정을 통지하였다. 그 후 원고가 위 징수유예기간 이후에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9. 8. 7. 원고에게 2019. 8. 23.까지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해 달라는 독촉장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무효 확인을 구하는 2018. 12. 15.자 각 취득세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 단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처분을 '2018. 12. 15.자 각 취득세 부과처분'으로 특정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8. 12.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관한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원고가 갑 제1호증의 1, 2로 각 제출한 납세고지서의 일자도 '2019. 8. 7.'로 기재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9.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처분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고지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2

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3284 판결 참조), 그 뒤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본세에 관한 한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과세관청의 취득세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지 중 본세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신고 후 무납부를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할 것을 고지한 것이므로,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단순히 조세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명령한 것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한편 지방세기본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고지 중 가산금 부분 역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체납된 지방세의 가산금을 알려주는 안내 정도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가정적 판단: 이 사건 고지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출금 상환 압박을 받아오던 중 [redacted]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2

효율적 처리 및 [redacted]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관리공사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운용 중인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ale and lease-back program)'의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redacted]관리공사에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양도한 후 이를 다시 임차하되 5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되찾아 올 수 있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의 양도는 민법상 양도담보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원고가 [redacted]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매각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당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확정적으로 위 토지 및 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비로소 면제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고지는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설령 이 사건 고지의 처분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redacted]관리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의 양도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추징사유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고지는 적법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2

고 판단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환매특약부 매매가 채권담보의 경제적 기능을 갖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단순히 담보권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권까지 일단 취득하고 단지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부담을 갖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2다84 판결 등 참조). 또한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고, 이러한 환매는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등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고 별개의 매매에 해당하여 당초 매매계약이 소멸된다거나 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계약 내용, 특약사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이라 할 것인데, 위 관련 법리에 의하면 양도담보의 경우와는 달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에서는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①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②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 ③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 환매특약부 매매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민법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2

양도담보와는 그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고,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담보계약의 요건 역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redacted]관리공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매매대금 이외에도 면세 대상인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7조의3 제2항에서는 자산관리공사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redacted]관리공사가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redacted]관리공사가 위와 같이 취득한 자산의 소유자로서 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2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2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비업무용자산 및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의 자산의 관리·매각, 매매의 중개 및 금융회사등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인수정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의 범위)

① 법 제88조 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끝.